
출입국 · 외국인 정책 동향

[2022년 하반기]

2022. 12.

KOTRA 투자종합상담실



목 차



1.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1
2.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을 통해 산업계 인력나 해소 지원 ...	3
3. 지자체 수요 기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실시	6
4.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TEA) 도입	8
5.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	11
6.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제작 배포	15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월)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 첨단기술의 범위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인턴 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음.
-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함.

또한,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첨단분야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 취·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음.
 - 반면,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여 기업의 성장 지원 예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개요**

- (내용)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에 대해 첨단 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활동 허용

□ **적용 대상**

- (초청 기관) 첨단기술 분야* 종사 기업(기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민간기업) ① 첨단기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②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 ③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④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첨단기술의 범위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 (국민고용보호) 각 기관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인턴 고용 가능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 3년간 고용 제한 적용 유예)

- (외국인) 해외 우수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

* Time지(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 **첨단기술인턴 체류지원 특례**

- (체류 지원)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확대(현행 구직비자 6개월→1년), 인턴 급여 수령 허용(최저임금 이상)
- (유학, 취·창업지원) 국내대학 유학 희망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취업비자, 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

* 유학(D-2)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표준입학허가서로만 심사)

** ① 인턴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학력, 경력 요건 면제, ② 기술창업(D-8-4) 비자 점수제 가점 15점 부여(총 80점 이상인 경우 자격취득 가능)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 신설,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등 비자 규제 완화

- 법무부는 2023년 1월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 제도 개선·시행 예정
 - *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7개 직종에 대해서만 운영
-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완화 등임
 - * 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

□ 전문인력 비자(E-7) 세부 개선 내용

1.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 허용
 - * 소득, 나이, 학력, 한국어 등을 점수로 평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 ** 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

2.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22년 2천 명에서 '23년 5천 명으로 대폭 확대

-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22년 11월 기준 320,616명 합법 취업 중)의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 '17년 600명 → '19년 1,000명 → '21년 1,250명 → '22년 2,000명으로, '22년 11월 기준 5,241명 취업 중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확대('22년 2천명→ '23년 5천명) 하되, 선발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하기로 함.

3.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등 그 밖의 개선사항

-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 기준) 완화

- 그동안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중 외국인 임금 기준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음.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80%('21년 기준 연 3,200만 원 수준)이상의 임금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20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임금(월 259만 원, 연 3,100만 원 수준)보다 높아,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대상 외국인 고용 시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상황임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 이에,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을 완화*

* 일정 기간(3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21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 적용

- 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근무경력) 완화 및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 인원(2인→5인) 확대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이전 복귀할 경우, 현지 고용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을 위한 비자(E-7) 요건 완화*

* (기존) 해외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제품생산 관리자로 초청 허용 → (개선) 해외법인 근무자 중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는 6개월, △전문학사,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으로 근무경력 요건 완화

- 그 동안 침체된 호텔,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을 최대 2명에서 5명으로 확대

-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 현재 조선업체가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설립 후

일정기간 경과(3년)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신생 기업도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업체 기준 완화*

- * (기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만
고용 가능 → (개선) 최근 1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1.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 필요
-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발급 필요

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개요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 '22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필요

※ 시범운영 기간 : '22. 10. 4. ~ '23. 10. 3. (1년)

-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23년 1월 1일)에 대비하여 오는 10월부터 1년 간 운영되며,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주민 확보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 내용

○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 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

○ 이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

○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단, 위반 시 비자 취소)

-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거주(F-2)비자 *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거주(F-2)비자 :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초청 가능

- (유형 2. 동포 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를 '22.9.1.부터 도입

1. 도입 배경

- '22.6.1.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
- 이에 법무부는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2.9.1.(목)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결정**
 - * '22.8.2. ~ 22. 제주 도착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되었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

2. 제도 내용

-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붙임1]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함.
-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붙임2]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함.
 - *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나 「제주특별법」제197 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 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
-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B-1)

총 66개국	
아시아 (7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튀르키예(터키)
미주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 (3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오세아니아 (1개국)	뉴질랜드
아프리카 (3개국)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2.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B-2)

총 46개국·지역	
아시아 (10개국)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u>마카오</u> , <u>일본</u> , 쿠웨이트, 홍콩, <u>타이완</u>
미주 (7개국)	미국, 캐나다,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11개국)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오세아니아 (13개국)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u>미크로네시아</u> , <u>사모아</u> , <u>솔로몬군도</u> , <u>키리바시</u> , 팔라우, 피지, <u>통가</u> , 투발루, <u>호주</u>
아프리카 (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스와질랜드(에스와티니), 보츠와나

* 밑줄친 8개 국가는 현재 잠정정지(사증 필요)

* 단, 일본, 대만, 마카오는 8월 1달간 한시적으로 무사증입국 허용

□ 시행 배경

- 외국인의 자유로운 입국을 통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시범지역으로 개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확보
 - '98.4.15. 중국인 10인 이상 단체관광객 제주 무사증입국 허용한 이래, '02.5.1.부터 제주도 무사증입국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개별관광)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무사증입국)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 허용 (제197조 제1항)
- (체류지역 확대허가)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육지)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 필요 (제198조 제1항)

□ 제주무사증 입국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3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 체류가능 기간 : 30일**□ 참고사항**

-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20. 2. 4. 제주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였다가, '22. 6. 1.부로 재개됨

장기 체류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

-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하여야 함.

-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 필요

※ 등록센터 위치 및 사전 등록절차 안내는 붙임 자료를 참고

-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 2019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 : 국민 55.5%, 외국인 15.7%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입국자 수가 급감하여 2019년 통계 인용)

1.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전국 19곳)

등록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	032-740-7400	07:00~18:00 (휴무일 없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출입국서비스센터	032-740-7368	
김포국제공항	2층 출입국민원실	02-2664-6202	평일 09:00~18:00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2층 출국사무과	051-979-1300	
대구국제공항	2층 대구출입국 공항분실 내	053-980-3572	
제주국제공항	3층 귀빈실 옆	064-741-5500	
도심공항	도심공항터미널2층 도심공항출장소	02-551-6923	
서울역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2층 서울역출장소	02-362-8431	출국심사 시 (당일출국자만)
인천항 (국제선)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내	032-890-9164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내	051-461-4973	출국심사 시 (당일출국자만)
청주국제공항	1층 여객청사 동편 (청주 출입국 공항분실)	043-214-0093	사전 전화문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1층 글로벌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	02-2650-6351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1층 8번창구	051-461-3127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1층 체류민원실	032-890-6322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1층 민원실 17번 창구	031-695-3846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체류민원실	02-6980-4741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체류실 7번 창구	042-220-2124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체류민원실	043-230-9019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체류민원실	062-605-5140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45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신청자가 직접 등록센터 방문

※ 제출서류(2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만 17세 미만으로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만 소지하고 방문

※ 단, 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국정부가 발행한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

② 지문 및 얼굴 정보 등록

※ 등록센터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청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취득하므로 증명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날인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 부착

④ 등록 완료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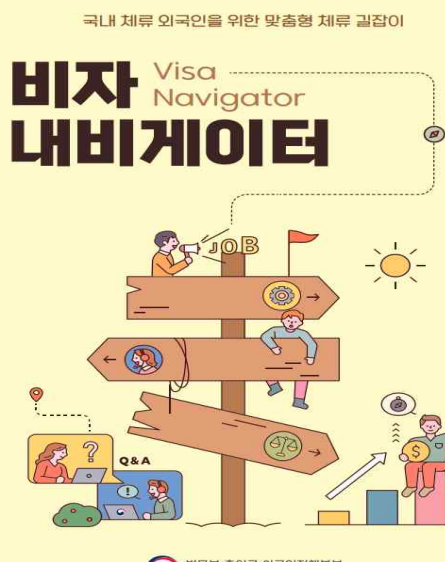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자

구 분		이용대상자	비 고
국 민		■ 만 7 세 이상	■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 만 7세 이상 ~ 17세 미만 사전등록 필요
외국인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 (현행) 만 17 세 이상	■ (현행)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 (개정) 만 7 세 이상 ※ '23. 1. 1.부 시행	■ (개정)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단, 만 7세 이상 ~ 17세 미만 사전등록 필요
	단기체류자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한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	■ 사전등록 생략 ■ 적법한 체류기간 내 출국 시 이용 가능

※ 만 7세 ~ 만 14세 해당자 사전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

-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함.
 -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등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
 - 다만, 외국인 등으로부터 여전히 대한민국 비자정보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하여 불편하고, 비자종류도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 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한편, 법무부는 '22년 10월에 우선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침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전자책 형태(한국어, 영어)로 제작·배포하여 동포들이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 동포 비자종류, 주요 취업분야, 동포 가족의 체류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 수록

구분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비자 내비게이터)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표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비자 Visa Navigator 내비게이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위치 정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 새소식, 알림판, 메인화면 배너 ▶ 카카오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채널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공지사항, 메인화면 배너	
제공 언어	▶ 한국어 ※ 영어는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게시 예정	▶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작 성 자

■ 투자종합상담실 법무부 파견관

주지정

KOTRA자료 23-009

출입국·외국인 정책 동향

2022년 하반기

발 행 인		유 정 열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3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투자종합상담실 (02-3497-1737)
I S B N		979-11-402-0594-3 (95320)



Copyright © 202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